

민원 업무별 준비물

	업무별	준비물
적성 검사	1종대형 1종특수 (견인,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지참) ○ 칼라사진 2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신체검사 (시력, 청력, 사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과 청력, 사지 확인이 가능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 ○ 수수료 : 하단 참고
	1종보통 (2종보통 7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지참) ○ 칼라사진 2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신체검사 (시력, 청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국가 또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한 경우 시력과 청력이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가능 (운전면허시험장 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갱신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지참) ○ 칼라사진 1매 (3.5*4.5Cm) ○ 수수료 : 하단 참고
재발급	분실·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분실 시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하단 참고
7년 무사고	2종 보통 (수동) ▼ 1종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수동 소지자로 접수일로 부터 과거 7년간 무사고 인 경우 가능 ○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 3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신체검사 (시력, 청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국가 또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한 경우 시력과 청력이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가능 (운전면허시험장 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 수수료 : 하단 참고

※ 소지면허증 중 최상위 면허로 신청서를 작성할 것
 ※ 영문운전면허증은 재발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칼라사진 1매 지참할 것

유 의 사 항

- ※ 칼라사진 : 3.5cm×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신체검사 면제 : 접수일로부터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을 출력하여 대체가능 (단, 전산에 등록된 시력이 판정기준이 적합한 경우 1종보통에 한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가능 ★

※ 건강검진내역서의 판정 기준 ※

- 1종시력 : 각각 0.5 이상, 양안 0.8 이상
- ★ 건강검진내역으로 양안시력(0.8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좌우 둘 중 한쪽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함★
- 2종시력 : 양안 0.5 이상, 한쪽 눈 실명인 경우 좋은 눈 시력 0.6 이상
- 청력 : 보청기 착용시 40db이하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색약 : 삼색식별이 가능함을 표기(색맹은 불가)

발 급 수 수 료

종별	일 반		모바일 IC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적성검사	13,000	15,000	18,000	20,000
갱신/재발급 7년 무사고 영문 운전면허증	8,000	10,000	13,000	15,000

면 허 증 종류 별 유효 기간

2023년 생일기준	만 65세 부터 (58년생)	만 70세 부터 (53년생)	만 75세 부터 (48년생 생일경과자)
1종 적성검사	5년 적성검사 있음	5년 적성검사 있음	3년 적성검사 있음 고령운전자 교육 치매선별검사
2종 갱신	5년 적성검사 없음	5년 적성검사 있음	3년 적성검사 있음 고령운전자 교육 치매선별검사

< 영문(ENGLISH) 운전면허증 >



앞면(한국어) FRONT KOREAN



뒷면(영어) BACK ENGLISH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23년 01월 17일부터)

지역	국가명 (63개 국가 / 90개 지역)
아시아 (15개국) (15개 지역)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17개국) (44개 지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대사추세츠주, 애리조나주,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건주,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캔자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위스콘신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미시간주)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서스캐처원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노바스코시야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PEI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17개국) (17개 지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중동 (4개국) (4개 지역)	레바논, 바레인, 예멘, 이스라엘
아프리카 (10개국) (10개 지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리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 국문(KOREAN) 운전면허증 >



앞면(한국어) FRONT KOREAN

년 월 일	기재사항변경	확인 인
- 1종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면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예정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2만원)가 부과됩니다. - 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뒷면(한국어) BACK KOREAN

※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여권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